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 사유의 입증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, 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,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며 근무 성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총 리 령

●총리령 제1632호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월 28일

국 무 총 리 인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, 뉘우치는 정도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”을 “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으로, “의결하여야”를 “의결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
- 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·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(이하 이 조에서 “소극행정”이라 한다)
- 7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11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12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제7조제2항 중 “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,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, 근무성적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뉘우치는 정도”를 “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

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평소 행실, 누우치는 정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으로, “첨부하여야”를 “첨부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마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파면-해임	강등-정직	정직-감봉	감봉-견책
바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	파면	해임-강등	정직-감봉	견책
사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아.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	파면-해임	강등-정직	정직-감봉	감봉-견책

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표 비고 제7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표 비고 제9호를 제3호로 한다.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)	파면	파면-해임	해임-강등	강등-정직
나.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라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	파면-해임	해임-강등	정직-감봉	견책

별지 서식 중 “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2”를 각각 “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1호의2·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,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**교육부령 제214호**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7월 28일

교 육 부 장 관 인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소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”를 “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”로, “의결하여야”를 “의결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직무태만”을 “직무태만(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12. 소극행정(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14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별표 제1호다목 중 “직무태만”을 “부작위 또는 직무태만, 소극행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목 중 “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”로 하며, 같은 표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성매매	과면	과면-해임	해임-강등	강등-정직
---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---